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 CONTENTS |

2024 Vol. 8

개인영상정보

1.	CCTV,	자율주행차 등	등 영상정5	보처리기기	'에 의	한 개인	정보 침	실해 디	생왕	<u>t</u>	1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2.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관련 법제 현황 및 향후 과제 8 [이해워/ 강워대 법한정문대학원 교수]

CCTV, 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CCTV 같은 기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기존의 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화했다.

또한 개정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촬영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보호 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보완 사항, 기술적 보호조치, 관리체계 개선 등 법제도적·기술적·운영적 측면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및 현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유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 분류

세부 유형	정의	예시		
착용형	·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카메라 有), 액션캠, 바디캠		
휴대형	·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부착·거치형	·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이동형 주차 단속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드론		

나. 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유무인 이동체는 주행 또는 비행 과정에서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분석하여 충돌 회피 등 안전한 이동을 위한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영상기기도 다양화되어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과의 결합으로 촬영된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등 지능화·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영상정보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 주별로 개별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고, EU와 영국은 GDPR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영상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GDPR의 적용을 받는다. EU의 GDPR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제25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5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각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NTIA는 2016년 '근접 드론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론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강조했으며, EU 집행위는 2015년 '드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로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영국은 2022년 자율주행차 관련 보고서를 통해 카메라 데이터



수집 시 차량 외부 표시를 권고했고, EU 집행위도 2020년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의 정보수집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법적 강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주요 개인정보 이슈

가. 무분별한 수집과 권리보장의 한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동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의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하여 디지털 정보로 저장한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운용될 경우,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영상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메라의 소형화와 다양한 기기에의 부착 및 착용 형태가 증가하면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수집 여부와 목적을 인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통지와 동의 절차의 실효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나. AI 기술 결합과 데이터 안전성 문제

AI 기술과의 결합으로 촬영된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등 지능화·고도화가 진행되면 서, 개인의 행태정보 수집과 프로파일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과 결합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추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특성상 데이터의 전송과 저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영상정보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관리·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취약점이 존재한다.

다. 목적 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8대 원칙 및 단계별 처리 기준 준수

당초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수집된 영상정보가 해외 서버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수집한 영상정보가 마케팅이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목적 외 이용과 국외 이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8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표2]. 특히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 목적의 정당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안전한 관리와 통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투명한 처리 절차 확립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8대 원칙

원칙	주요 내용
① 비례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정성 · 침해와 편익의 균형성 검토 필요
② 적법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처리 과정 전반의 적법 절차 준수
③ 투명성	·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 ·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④ 안전성	· 개인영상정보 유출·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이행
⑤ 책임성	· 개인영상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 준수 · 정보주체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⑥ 목적 제한	· 수집 목적 범위 내 최소한의 처리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⑦ 통제권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수단 제공 · 열람, 정정, 삭제 등 요구권 보장
⑧ 사생활 보호	·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표 3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기획·설계 단계	· 법적 근거 확인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명확화 ·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및 합리적 범위 판단
촬영(수집) 단계	· 사생활 보호 · 촬영사실의 표시 · 가능한 익명·가명 처리 · 촬영 거부시 조치사항
이용·제공 단계	· 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 추가적 이용·제공 ·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 · 처리 위탁
보관·파기 단계	· 보호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 체계 마련 · 운영관리방침 공개 · 보유기간 설정 및 관리 · 파기 방법
상시 보호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 주기적 점검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해야한다[표3].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 확인과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해야하며, 활용 단계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투명한 처리 절차를 보장해야한다. 이용·제공 단계에서는 목적범위 내 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보관·파기 단계에서는 보유기간설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상시 보호조치로서 안전성 확보 조치와 교육·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한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가. 법제도적 개선방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분류체계로는 AI 기술과 결합된 지능형 CCTV, 자율 주행차량, 드론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융복합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기술 융합 영상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Privacy by Design* 원칙의 도입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는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정책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나.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실증특례 제도 개선, 표준화 및 인증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확대하고, 사업화 단계별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술적 개선방안

AI 기술 발전에 맞춰 기술적 보안조치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에서는 생체정보나 행동패턴 등이 수집·분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 가명·익명처리 기술을 이에 맞게 업데이트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실시간 영상분석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암호화 및 접근통제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보안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라. 운영적 개선방안

신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관리체계도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점검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고대응 체계를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5. 결론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정형 CCTV와 함께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AI 기술과의 결합에 따른 데이터 처리 고도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 안전한 데이터 관리, 목적 범위 내 활용 등 다양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기술 환경에 맞는 법적 분류체계의 보완과 Privacy by Design 원칙의 단계적 적용,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데이터 보호 기술의 점진적 개선, 그리고 보호책임자 전문성 강화 등 법제도적·산업적· 기술적·운영적 측면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23.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와 시사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중심으로, 2023.10.
- 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EU AI Act Brief Pt. 2, Privacy & Surveillance", 2024.04.
- Asis Online, "Understanding the EU AI Act: A Security Perspective", 2024.04.

개인영상정보 보호 · 활용 관련 법제 현황 및 향후 과제



이해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정보(information) 혹은 데이터(data)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하면 선뜻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 법은 정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1] 데이터를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2] 결국 정보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통칭하는 무형의 추상적 관념이고, 데이터는 이러한 정보 중에서 ICT 기기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화체된 정보를 뜻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영상정보'는 무엇인가? 용어만 놓고 보자면 말 그대로 '영상'(image, 像)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3]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화체된 데이터, 즉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다. [4]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이미지 정보'의 절대 다수는 0과 1의 bit로 디지털화된 데이터 형태로 생성, 복제, 유통되므로, 결국 개인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연적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3년 3월 15일자로 개정되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대표적으로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며, ^[5] 그 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나 처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기는 CCTV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오늘날 거의모든 국민이 1대 이상 보유하는 스마트폰이야말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기기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드론에 설치된 촬영용 카메라, 소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휴대하는 영상녹화장치 또한 그러하다. 그럼에도 과거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성, 이동성을 본질로 하는 ICT 기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호와 활용 양 측면에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6]

이러한 배경 하에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7]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양자로 구분하고, 후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제25조의 2)하였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규정의 신설에 따른 준수 · 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2024년 9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 활용 안내서' (이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현황

가. 국내

앞서 언급하였듯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나누어 개념을 각 정의하였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의2호)

-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 대통령령에서는 ① 착용형 장치(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액션캠, 바디캠 등), ② 휴대형 장치(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③ 부착·거치형 장치(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드론 등)의 세 가지를 규정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단 ① 동법 제15조 제1항 각호(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정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위 예외에 해당하여 개인영상정보촬영이 적법하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함.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출처:「개인정보 보호법」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가이드라인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활용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 활용 기준"이라고 소개하였다. [8]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7의2호)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의 8대 기본 원칙

- 개인영상정보는 촬영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사전적 권리보장이 곤란할 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워 사후적 권리행사도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① 비례성 ② 적법성 ③ 투명성 ④ 안정성 ⑤ 책임성 ⑥ 목적 제한 ⑦ 통제권 보장 ⑧ 사생활 보호의 8대 원칙을 제시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및 권고사항 안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여부 판단 기준,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제시

AI 학습 활용시 조치사항 및 사례 안내

- 자율주행자동차나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원본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www.sandbox.go.kr)를 통하여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해외

1) 유럽연합

잘 알려졌듯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구속력있는 규범(regulation^[9])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흔히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번역되나, 이 글에서는 'GDP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의 규율을 받는다. GDPR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GDPR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려면 통상적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처리의 적법성(GDPR 제6조)이 갖추어져야 하며, 처리 적법 요건이 정보주체의 동의인 경우 동의의 요건(GDPR 제7조)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GDPR에 따라 설치된¹¹⁰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U Data Protection Board, 이하 'EDPB'라 한다)는 GDPR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111]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2019년 5월 '영상기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2020년 1월에는 이를 개정한 가이드라인 2.0을^[12] 발간하였다. 위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할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로서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과 공익을 우선 들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환경의 특성상 드물게만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영상정보 처리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의 최소화, 안면 인식 등 개인영상정보를 단순히 개인정보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생체인식정보로 처리할 경우의 법적 근거 및 보안 조치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나 EU와 달리 연방 차원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 차례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state)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다(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1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처리가 문제되는 국면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에 거리의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경우인바, 이 경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자와 피촬영자인 정보주체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나 EU와 달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연방 차원은 물론 주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와 같은 사법상 관계가 아닌 공법상 관계, 예컨대 법무부의 드론 사용이나 경찰의 바디캠 촬영과 같이 정부기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서는 연방법인 비디오감시방지법^[14]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범자가 참조할 수 있는 모범 사례, 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있다.^[15]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 가전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가 보편화된 오늘날 개인영상정보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 또한 그 성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영상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처리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개인영상정보는 그 특성상 가명처리를 하면 데이터로서의 가치나 그 활용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역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2024년 9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그에 기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 안내가 제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여전히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물론 위 가이드라인상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가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즉, 블러링처리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는 있으나, 규제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부처의 별도 행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가능한 제도이며 그에 따른 실증특례 또한 말 그대로 '실험'을 위한 임시제도로서 기간, 장소, 방법 등이 제한된다. 과연 이러한 현행 법제도가 글로벌 무한 AI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얼마나 적절한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길거리와 같이 공중에게 개방되고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합리적 기대는 개방되지 않은 내밀한 사적 장소보다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에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낮은' 영상을 개인영상정보라는 이유로 활용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법제도가 보호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관련 당국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말 그대로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다른 권리나 사회적 가치의 보장과 균형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주석

- [1] 예컨대「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1호.
- [2] 예컨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 [5] 예컨대 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6] 최경진 외. '개인정보 보호법', 박영사(2024), 330쪽.
- [7] 법률 제 19234호. 시행일은 개정 조문별로 상이하나, 이 글에서 다루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에 관한 규정(법 제25조의2)는 2023. 9. 15. 시행되었다.
-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10. 14. 보도자료("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1쪽.
- [9] EU의 규범은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로 나누어진다. 규정은 EU 회원국의 국내 입법 없이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며, 지침은 EU 회원국에 적용은 되지만 회원국의 개별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규범이다. 홍승진,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1)", 법제(2007. 7.), 81-82쪽.
- [10] GDPR 제68조에 따라 EU에 설치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이다.
- [11] GDPR 제70조 1. (e).
- [12] EDPB, Guidelines 3/2019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rough video devices version 2.0 (2020. 1. 29.)
- [13]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국내에서는 흔히 CPRA로 약칭된다.
- [14] 18 U.S. Code § 1801 Video voyeurism
- [15]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와 시사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중심으로", 2023. 10. 30., 20-35쪽.

Privacy Report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Privacy Report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는
디지털·정보보호 관련 글로벌 트렌드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기획, 발간하는 심층 보고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 출처 『Privacy Report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발행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Tel: 061-820-1231

PRIVACY REPORT 2024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

2024 Vol. 8



